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학교·영화평론가

거리, 지하철, 엘리베이터... 어디서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하는 모습은 일상적 풍경이다. 이렇게 공기처럼 퍼진 소셜미디어 소용돌이에 휘말려 든 중년 남성이 고뇌에 사로잡혀 갈등하는 영화가 등장했다.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2017, 마이크 화이트)에서 브래드(벤 스티틀러)는 ‘카페인 중독군’(카카오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 글자를 딴 신조어)에 시달린다.

20여 년 전, 보스턴에 있는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공익적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가 SNS로 찾아본 동창들은 물질적 자본에서 그를 압도한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일한 경력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허버드대 겸임 교수이기도 한 동창, 헤지

경쟁을 넘어 고독과 친구 되기

펀드로 거부가 된 동창, 일찍이 큰돈을 벌고 은퇴해서 젊은 여성과 하와이에서 사는 동창도 있다. 이렇게 한때 같이 공부했던 동창들은 대부분 성공해서 잘사는데, 그는 명분 있는 일을 하지만 돈은 많이 벌지 못해, 다택을 아들 대학 학비를 걱정하며 열등 콤플렉스에 빠져든다.

SNS에 뜬 성공한 동창들

빠르게 변하는 삶의 속도를 따라잡으며 SNS 과잉 정보에 휘말린 주인공 브래드는 정보화 혁명 시대의 지화상처럼 보인다. 영화의 원제목 ‘브래드의 사회적 지위’(Brad’s status)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신자유주의 경쟁에서 뒤처진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패배감까지 느낀다. 그 와중에 음악 재능이 있는 아들이 허버드 대학에 입학하면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보스턴 거리의 악사를 보며 음악 재능만은 돈 벌기 힘든 아들의 앞날도 걱정한다. 이렇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그는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한 동창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러나 그는 SNS에 뜬 동창들의 화려한 삶의 이면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그들의 경쟁을 넘어 자신을 외롭게 성장하

는 탈주를 시도한다. 남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여길까 전전긍긍하는 그를 부끄럽게 여기던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아빠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굳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라도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나 홀로의 인생길이 되라는 순간이다.

이렇듯 무한 정보 접속이 가능한 SNS 시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본질적 토대로 작동한다. 압축 성장을 해 온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는 대가족 관계를 중시하며 외로움을 꺼리는 관습이 그 잔영을 드리우고 있다. 유독 세대 차이가 심한 이유도 그 여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즐기는 ‘올로’(YOLO)식 생활양식은 자신에게 몰입하는 삶의 방식으로 뜨고 있다. 먹기, 영화 보기, 여행 가기를 일컫는 신조어, ‘혼밥’, ‘혼영’, ‘혼행’ 등은 SNS 정보와 접속하며 혼자 삶을 즐기는 현상이다. 4인 가족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통계가 보여 주듯이, 1인 중심 용품이 ‘1코노미’란 신조어를 파생시키며 번창하는 중이다.(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18.8%를 차지하는 4인 가구를 넘어섰다).

때론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고독’을 긍정적으로 나누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유사어이기도 하다. 정보화 시대 이전에도 ‘나의 고독’(Ma Solitude)이란 상송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음유시인 조르주 무스타키의 가사처럼, 고독과 함께 잠을 자기에 고독은 연인 같고, 그림자처럼 믿을 만한 친구로 나를 따라다니기에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임을 보여 준다. 고독한 산책이 사상가를 걸러 내는 것도 그런 이치일 것이다.

외톨이는 적극적 관찰자

독일의 저술가 마리엘라 자르도리우스는 ‘외톨이는 혼자서 삶에서도 대가이지만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적극적인 관찰자’(‘고독이 나를 위로한다’에서)라며 고독을 권한다. 입재법의 노래 ‘비상’에서도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라고 노래하며, 고독과 외로움을 기쁘게 수용한다. 세상과 무한 접속하는 정보화 혁명의 파고를 타며, 고독을 친구로 삼으며, 거기서 깨닫는 기쁨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다.

NGO칼럼

개들도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오길



임용관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선임감사

며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많아” 하면서 가격도 특별히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심지어는 키우던 푸들이나 말티즈 등의 소형견을 직접 데려와서 잡아달라는 사람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 식용이 허용된 나라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개 식용 농장이 무려 3000여 곳이나 있어 ‘반려동물 도살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100만마리 이상이 도살되는 상황에서, 이 가여운 생명들은 날마다 썩은 음식과 물을 먹고 1년도 살지 못한 채 30초마다 희생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썩은 음식 쓰레기를 먹고 동족이 보는 앞에서 전기로 도살하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이 농장을 찾을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와 눈이 마주했던 동물들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말을 보내고 나면 그 많은 청장막이 텅텅 비어 있기까지 합니다. 어떤 개는 우리를 보고 꼬리를 흔들주었고, 또 어떤 개는 우리 두려운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개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했습니다.

개 농장 소식을 접한 전국인의 수많은 시민과 동물단체들은 이 야만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나선 덕분에 농장주들도 폐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평화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에 대해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with)에서는 신속히 부지를 마련해 50마리에 대한 구조 계획을 세웠지만 나머지 동물들을 수용할 공간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고 여건마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는 시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면 자부담으로 시설 공사 및 인력 채용, 관리, 입양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고 농장주와의 평화적 해결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식용 개이기에 썩은 음식을 먹도록 남기면서도, 동족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인간만을 바라보

는 이 바보같은 생명들이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평생 밟지 못했던 땅도 밟아 보고, 푸듯한 풀내음도 맡아 보고, 그림자로만 봐왔던 햇볕도 등으로 따스히 느끼고 싶어합니다.

이제 이 농장 개들은 누군가가 손만 내밀어주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농장주들도 폐업을 약속했고 시민과 동물단체들도 동물 전부의 구조를 원하고 조건없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 동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남 모란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란시장은 1년에 약 8만 마리 이상 식용개들이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명 시장의 의지와 상인들의 협조로 개 전시 판매 철수를 시작으로 도축 시설도 자진 철거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 시장이라 불리던 모란 시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동물단체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뛰고,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더 노력해주었으면 합니다. 행정에 부담이 되는 선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선례를 만들어 시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고

개헌, 정치권만의 리그를 경계한다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이자12% 상한제 등을 포함시켰다. 헌법에 사회경제적 권리들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헌법에 규정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총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10차 개정을 앞 둔 현재까지 30년의 간극은 가장 오래된 기간이다. 다원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즉, 헌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우리헌법이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경성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개정하기 쉬운 연성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경성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들의 주된 이유는 권력구조 문제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의해 쉽게 개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미국은 경성헌법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 사회경제적 권리들에 대해서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맞지만 국민기본권의 문제인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회개헌특위에서 제2소위원회 구성되고 논의는 되고 있지만 자극히 미약하다. 서유럽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2차 대전 이후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들을 헌법에 명시했고 프랑스는 1958년 5공화국 헌법 전문에 포함시켰다. 브라질은 1988년에 개정된 헌법에 주 노동시간 40시간과 최저임금제, 대출

편은 현재처럼 경성헌법으로 가되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경제적 권리들에 대해서는 연성헌법으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게 헌법을 분리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배제된 개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매년 논의되어 왔지만 정치인들의 실익에 대한 셈법이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된 것은 먼저 우리 헌법에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자격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되지만 국민투표는 형식이 지나지 않는다. 전체 유권자 중 50%의 투표와 투표자의 50%의 찬성으로 가결되니 실제 국민 4명중 1명만 찬성해도 개헌은 효력을 발휘한다. 개헌이 실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논의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투표가수기 역할만 하게하고 있다. 일본이나 브라질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이 통과되지만 그들 나라는 전체 국민의 절반인 50%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스웨덴이나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차기 선거를 통해 구성된 새 의회에서 개헌이 한 번 더 통과가 되어야 하니 국민들은 개헌에 찬성할 경우 개헌을 발의한 의원들을 다음 선거에서 다시 신임을 하고 반대할 경우 개헌을 발의한 의원들에 표를 주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임에

도 우리나라처럼 개헌이 정치권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는다.

내년 개헌 가능한가? 국민운동으로 전환해야한다.

내년 개헌을 앞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현행 헌법은 국회 3분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300석의 국회의석수로 볼 때 자유한국당이 107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니 의원내각제로 가야한다는 개혁구조의 문제만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한다”는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결국 개헌의 발목을 잡고 마지막 합의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의 문제만으로 정치권의 빅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촛불광장의 국민들의 외침은 “이게 나라냐”는 것이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사회전반적인 개혁의지를 헌법에 그리고 법률로 제도화해야만 나라다운 나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환되어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개헌이 국민운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치권만의 리그로 끝날 경우 반드시 졸속 처리될 확률이 높다. 지난 세기 개헌이 그러했다.

社說

위안부 피해자 모욕 어느 교수의 황당한 발언

전남의 한 국립대학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욕보이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수는 또한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인격 모독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교수는 지난 4월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언급하며 “사실 내가 보기엔 그 할머니들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그런 줄 알고 일본에 끌려간 여자들도 있을 거고 원래 끼가 있으니까 따라간 거야”라고 비하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내 학생회 사무실에 불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보고 “아무 데서나 피펫러 자고 그러는데 켈레 아니냐, 방 만들어서 피자마 바람으로 남자 여자 어울리면 좋겠냐”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또한 “20대는 (여자들)촉구공이라 한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30대는 배구공이야. 여섯 명. 40대는 피구공이야, 공이 없으면 피해 버린다”는 등의 말도 서

슴지 않았다.

이밖에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하품을 잘 받으려고 (나를) 유혹한다”라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성들이 20대에 몸을 굴러서 나중에 애를 못 낳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했다. 제주 4·3항쟁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군인들을 막 죽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대학본부는 지난 5월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발언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수 또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한 뒤 이번 2학기는 자진해서 수업을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발언을 한 당사자가 사법대학 소속 교수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제공한 녹취 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자질이 없는 교수는 퇴출 등 할 수 있는 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18 진상 규명 기무사 자료에 달려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5·18 관련 자료 전부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 공개기로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과 발표 명령자, 암매장 등 미완의 과제들이 규명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무사 자료에는 그동안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직무대리는 최근 “민감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번엔 (특조위에) 다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48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자료 중 1~9권은 그동안 진행됐던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도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존안자료는 작성자가 누가 될 것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상황 자체를 자세히 기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5·18 당시 모든 군부대 작전·지휘·명령 체계가

나와 있을 것이다. 전두환의 광주 방문이나 발표 명령의 단초 또는 암매장 관련 직간접 정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5월 단체들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1980년 5월27일 도청 진압작전 후, 주동지로 돌아간 11공수부대원들이 6월 초 일반 보병 복장으로 갈아입고 광주로 내려와 가매장한 시신의 발굴 작업을 벌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광주일보 9월18일자 1면> 계엄군이 시민 학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매장한 시신을 발굴해 빼돌렸거나 더욱 깊숙이 암매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무사 존안자료는 이러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5·18특조위는 그렇게 해서 발표 명령자와 당시 실권자인 전두환의 행적 및 암매장 여부를 밝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다. 이는 원래 절대왕권이 성립되기 이전, 농민과 상인 계층이 세금을 냈던 것과는 달리 면세 특권을 누리던 귀족층에게도 세금을 거두기 위해 도입된 논리다.

우리 헌법 제3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해 국민개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물론 직접세의 경우 면세특이하는 근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국민개세주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크게 보

다, 반면 찬성하는 쪽은 종교인이라도 국민인 이상 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1992년 국세청은 강제 징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에도 두세 차례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됐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때도 ‘2년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시행을 면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세청이 발족한 지 2년이 흐른 1968년 7월2일,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은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 소액세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도 종교인 과세는 ‘뜨거운 감자’였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라논쟁을 벌였다. 반대하는 쪽은 종교인의 수입원인 헌금이 기부금 성격이어서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

다. 하지만 그때도 ‘2년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시행을 면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으로 미뤄도, 불과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이 또다시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천주교와 불교 조계종 측도 오래전부터 찬성 입장을 보여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 과세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믿기 때문이다.

/박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